

의안번호	2216429
의 퇴 인	안철수 의원
회 답 일	2026.3.24.
추 계 번호	26B054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9조의3 (구직급여의 수 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함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 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 산하여 <u>6개월</u> 이상일 것	의무규정																	
2	[별표 2] 자영 업자의 구직급 여의 소정급여 일수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69조의6 관련)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5">피보험기간</th></tr><tr><th>1년 미만</th><th>1년 이상 3년 미만</th><th>의무규정</th><th>5년 이상 10년 미만</th><th>10년 이상</th></tr><tr><td>소정급여일수</td><td>120일</td><td>150일</td><td>180일</td><td>210일</td><td>240일</td></tr></table>	구 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의무규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의무규정
구 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의무규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9조의3(구직급여 의 수급 요건)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 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2	[별표 2] 자영업자의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일수		

2. 상세 사유

- 현행법은 폐업한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구직급여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있음
 - (지급요건)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의 사유로 폐업한 자영업자
 - (경영악화) 6개월 연속적자, 직전 3개월 매출액 전년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추세 등
 - (정당한 사유) 자연재해, 동거친족 간병, 질병·부상, 거소 이전, 병역, 임신·출산 등
-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소정급여일수 기준을 근로자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가 증가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및 소정급여일수와 비자발적 폐업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비자발적 폐업 요건은 ①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 ②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등이 해당함
 - 따라서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 폐업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개정안 시행 이후 소정급여일수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보험자 중 경영악화 요건 등을 충족하는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의 확대 규모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표 3]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현행	구분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개정안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자료: 의안정보시스템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